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22 선고 2023가단1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이광형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1. 6. 4. 접수 제15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1. 6. 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앞으로 2021. 6. 4.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21. 7. 26. 충북음성경찰서에 ‘피고 B이 2021. 6. 4.경 원고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위 경찰서는 2022. 1. 5.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B과 E은 2019년 10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황제버섯, 아침송이 등을 생산하여 이를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명이 공동으로 구입하되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9. 12. 3.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대출금 이자, 버섯배지 값 및 에어컨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 B에게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21. 6. 4.경 원고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피고 C에게 매각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정산금채무 4,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6. 4.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참조),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7. 26. '피고 B이 2021. 6. 4.경 원고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고소한 점, ②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동업재산으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4. 피고 B앞에서 피고 C 앞으로 2021. 6. 4.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고소일인 2021. 7. 26.에는 채무자인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써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고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1.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6. 4.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4. 피고 C 앞으로 2021. 6. 4.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6. 4. 피고 B과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위 2021. 6. 4.자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정산금채권 4,8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이행각서(갑 제1호증) 중 피고 B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와 피고 B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에게 송금한 합계 4,800만 원(갑 제2호증의 1, 2)이 피고 B에게 동업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또한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조합 해산 시에 어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인 조합원이 그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B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법리에 따라 피고 B에게 곧바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설령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